

1. 개정 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고,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개정법률에서 부령에 위임된 정년연장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3) 도선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강제도선 면제 규정 정비, 도선구 통합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선사시험 응시원서와 면허증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안전교육 및 정년연장 교육 신설(제9조 개정)

도선사가 면허갱신 등을 위해 받는 법정교육에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 추가

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하위법령」으로 이관(제9조의2~제9조의6 삭제)

1) 국가필수도선사 자격기준(제9조의2), 지정절차(제9조의3), 지정서의 반납(제9조의4) 및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제9조의6) 규정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2) 도선사 정년연장제도 개선에 따라 현행 정년연장 관련 규정(제9조의5)을 삭제하고, 후술하는 정년연장 세부기준 신설

다. 도선사 정년연장 세부기준 신설(제9조의2 신설)

정년연장 기준을 현행 1가지(현직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강화해, 1) 국가필수도선사는 현직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과거 지정 경력(최소 3년 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 60세 이상 도선사는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훈련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며, 3) 신체능력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체력평가*** 결과 제출로 갈음하되, 정년연장 신청시점 기준 6개월 내 실시한 것으로 한정

* 다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이내인 도선사는 현직인 경우 경력 인정

** 교육과정 개설기간 등을 감안해 개정법령 시행 후 6개월 내 이수 시 경력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력인증 기관(국민체력 100)에서 실시한 체력측정에서 4개 이상의 항목(상대악력 항목 필수)에서 전체 3등급 중 2등급 이상 획득

라. 강제도선 면제규정 정비(제18조 개정, 별표4의2 신설)

1) 국내 항만에 익숙한 국적선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강제도선 면제 규정이 기존에 나열식으로 되어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표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2) 「도선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된 '위험화물운반선'의 정의를 시행령과 통일

마. 도선구 통합운영 근거 규정 신설(제17조 및 별표 3 개정)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강제 도선구를 운영 중이나, 일부 도선구의 경우 도선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도선구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도선사들의 이동근무 등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 도선사 수급관리 및 선박입출항 적시지원 도모

바. 서식 일부 개정 및 타 법령 이관(별지 제3호 및 제9호 변경, 별지 제5호의3, 제5호의4, 제6호의2 서식 삭제)

1) 현행 「도선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5년)을 추가해 면허갱신 시 편의를 높이고(별지 제3호), 2) 블라인드 채용추세를 감안해 도선사시험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며(별지 제9호), 3) 국가 필수도선사의 지정신청서, 지정서 및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서식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별지 제5호의3, 제5호의4 및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수교육의 기간은”을 “보수교육과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각각”으로 한다.

2.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시 승하선 안전에 관한 교육
2. 체력 및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 3년 이상의 국가필수도선사 경력(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이내인 도선사는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교육훈련 이수 여부: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정년연장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한다.)

3. 신체적 능력: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체력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체력측정에서 4개 이상의 항목(상대악력 필수)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할 것. 다만, 정년연장신청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것에 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사는 해당 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년연장이 된 도선사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에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도선구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은 다음 각 호”를 “선박의 기준은 별표4의2”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

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을 “통과하는 6천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항”으로,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을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강제도선”을 “강제 도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별표4의2, 제3항 및 제4항”으로, “별지 제10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별표4의2,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년이 도래해 정년연장신청을 하려는 도선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정년연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 관련)

도선구의 명칭	구역
군산항 도선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서단, 연도 서단,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북위 35도56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내초도 산정(해발 59미터)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대산항 도선구	충청남도 안면도 남단으로부터 대화사도 남단, 연도 서단, 마서면 송석리 서단을 연결한 선 안의 구역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 각으로부터 국화도 동단, 입파도 동북단, 학산서, 말륙도, 풍도 남단, 안도 남단, 북위 36도51분47초 동경 126도07분03초를 거쳐 정자두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동해항 도선구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옥계항 해상구역 북서단(북위37도37분35초 동경129도03분08초 및 북위37도38분10초 동경 129도04분43초), 옥계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8분10초 동경129도05분22초), 묵호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3분22초 동경129도08분12초), 동해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1분10초 동경129도10분22초), 삼척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26분15초 동경129도12분07초), 삼척항 해상구역 남동단(북위37도25분50초 동경129도12분07초) 및 삼척항 해상구역 남서단(북위37도25분44초 동경129도11분37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속초시 북동방(북위38도12분48초 동경128도36분01초)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쳐 조도 남단과 북위38도11분35초 동경128도36분0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호산항 비화진 돌출부(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0분52초)로부터 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2분36초, 북위37도08분42초 동경129도23분56초 및 고포측 돌출부(북위37도08분42초 동경129도21분53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과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45분02.89초 동경128도58분18.35초)으로부터 북위37도46분14.90초 동경129도00분07.15초, 북위37도45분12.94초 동경129도01분38.99초, 북위37도44분01.21초 동경129도00분22.21초, 북위37도44분15.71초 동경128도59분18.3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마산항 도선구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말박도 서단, 양지암취 등대, 서이말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목섬, 씨앗섬, 신수도북단, 신수도남단, 제7도선점(북위 34도 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 울포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및 비진도 선평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목포항 도선구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정주도 남단, 구례도 남단, 장좌도 북단, 불무기도, 가사도, 불도, 각홀도, 진도 서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완도읍 대구도로부터 달해도 서단과 신지도 서북각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부산항 도선구	동생말 끝단과 용호부두 방파제 끝단 및 광안대교 램프 끝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수역, 용호동 승두말부터 오륙도 등대, 생도, 영도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감말부터 두도등대, 자담말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다대포 자담말 서편 끝단, 동편등대부터 방파제 및 서편등대 끝단과 송부 육상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및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가덕도 감수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여수항 도선구	대도로부터 진서로 그은 선과 대도로부터 남해도 평산갑(북위 34도44분41초 동경 127도50분12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54분50초 동경 127도50분12초),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7도47분30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7도47분30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54분50초 동경 127도48분57초), 천석산 서남 돌단(북위 34도57분01초 동경 127도50분4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울산항 도선구	동대산 삼각점(해발 116미터)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28분40초 동경 129도24분53초)과 북위 35도27분59초 동경 129도23분59초, 북위 35도22분21초 동경 129도26분10초와 북위 35도22분42초 동경 129도22분48초 지점(북위 35도25분05초 동경129도24분51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45미터의 원호(圓弧) 중 북위 35도22분21초 동경 129도26분10초 지점과 북위 35도22분42초 동경 129도22분48초 지점을 연결하는 분호), 북위35

	도24분11초 동경129도22분06초, 북위 35도24분11초 동경129도21분1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돌안산 최동단(북위 35도30분59초 동경 129도26분47초)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인천항 도선구	김포시 양촌면(북위 37도35분36.05초, 동경 126도34분08.57초)으로부터 세어도 북단, 영종도 북단, 덕적도, 울도, 안도, 장안서, 창서, 대부도 남서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제주항 도선구	제주항 서방파제 동북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과 서귀포항 강정지구 남방파제 끝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및 애월항 북방파제 동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평택·당진항 도선구	대부도 남서끝단으로부터 창서, 장안서, 안도, 풍도 남단, 말륙도, 학산서, 입파도 북동단 및 국화도 동단을 거쳐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포항항 도선구	포항시 북구 용한리 동단(북위36도07분15.7초 동경 129도24분58.5초)으로부터 북위36도07분05.8초 동경129도26분22.9초, 북위36도05분53.6초 동경129도27분50.8초, 북위36도05분21.1초 동경129도27분50.8초, 북위36도05분20.7초 동경129도29분44.3초, 북위36도01분23.9초 동경129도29분44.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비고 1. 도선사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도선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2. 지리학적 경도 및 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박 및 선장의 구분

1. 일반기준

- 가. 선박의 총톤수를 산정할 때 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제외한다.
- 나. 선장의 강제도선 이력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다.
- 다. 한 도선구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이·접안하면서 강제도선을 받은 실적을 강제도선을 받은 실적으로 본다.

2. 세부기준

- 가. 최초로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의 경우 면제 요건

구 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그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총톤수 기준 6천톤 미만	총톤수 기준 3만톤 미만
선장의 강제 도선 이력	1년 이내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18회 이상	1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9회 이상

비고. 선장의 강제도선 이력은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해당 도선구에서 과거 강제 도선 면제 이력이 있는 선장의 경우 면제 요건

구 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그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박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으로 총톤수 기준 6천톤 미만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박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으로 총톤수 기준 3만톤 미만
선장 의 강제 도선 이력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에서 하선 후 3개월 이내	추가 강제도선 이력 불필요	추가 강제도선 이력 불필요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에서 하선 후 3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	면제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강제도선 필요	면제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강제도선 필요

비고.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에서 하선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도선구에 1년 이상 입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장은 하선 후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경과한 선장으로 간주한다.

(1쪽)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PILOT LICENSE REPUBLIC OF KOREA

85mm×125mm[백상지(150g/㎡)]

(2쪽)

1급 도선사면허증	사진 (3cm×4cm)
면허증번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2쪽)

2급 도선사면허증		사진 (3cm×4cm)
면허증번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2쪽)

3급 도선사면허증		사진 (3cm×4cm)
면허증번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2쪽)

4급 도선사면허증		사진 (3cm×4cm)
면허증번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3 쪽)

FIRST CLASS PILOT LICENSE		사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SE: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 _____ day of _____ Republic of Korea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Mayor / Governor		

(3 쪽)

SECOND CLASS PILOT LICENSE		사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SE: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_____day of_____ Republic of Korea 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 Mayor / Governor		

(3 쪽)

THIRD CLASS PILOT LICENSE		사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SE: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_____day of_____ Republic of Korea 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 Mayor / Governor		

(3 쪽)

FOURTH CLASS PILOT LICENSE		사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SE: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_____day of_____ Republic of Korea 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 Mayor / Governor		

(4쪽 ~ 9쪽)

면허증확인란		
날 짜	확 인 사 항	확인 인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도선구의 명칭		
	면허일자		
	정년퇴임일자		
	정년연장 기간 부터 까지 (년간)		
	정년연장 사유		

「도선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또는 법률 제778호 도선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항 및 종전의 「도선법」 (법률 제77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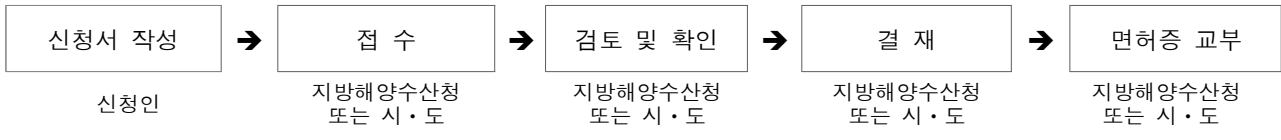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 1부 2. 교육훈련 이수증 1부(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것) 3. 체력인증서 1부(신청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 받은 것)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선사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

※ 희망(수습) 도선구 란에는 하나의 도선구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한자:	사진 (3cm x 4cm)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해기사면허증	면허등급:	발급일:	발급기관:
선장의 직무로 업무정 지를 받은 횟수		금고 이상의 형벌 사항	
희망(수습) 도선구		필기시험 합격일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 증명서(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한 모든 승선경력)을 말함] 2. 도선사시험: 없음

----- 절 ----- 취 -----

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3cm x 4cm)
	년도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u>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u>
2. ~ 5. (생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설>	② <u>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도선시 승하선 안전에 관한 교육</u>
	2. <u>체력 및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u>
② <u>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 ----- ----- -----.
③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u>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u>	④ ----- ----- ----- <u>보수교육과</u> <u>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u> <u>의 기간은 각각</u> -----.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 최근 3년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9조의2(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 3년 이상의 국가필수도선사 경력(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이내인 도선사는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교육훈련 이수 여부: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정년연장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한다.) 3. 신체적 능력: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체력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체력측정에서 4개 이상의 항목(상대악력 필수)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할 것. 다만, 정년연장신청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실시한 것에 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

현행	개정안
<u>제9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u>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	<u>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년연장이 된 도선사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에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u> <u>1. 제9조의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같은 조 제2호의 자격기준의 경우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u> <u>2.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u> <u>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u>	

현행	개정안
<u>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u> <u>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u> <u>제9조의4(지정서의 반납)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u> <u>제9조의5(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국가필수도선</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에 정년이 된 것으로 본다.</u> <u>제9조의6(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의 2서식과 같다.</u> <u>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단서 신설></u>	<u><삭 제></u> 제17조(도선구) ----- ----- --. <u>다만, 도선사의 수급 등을 고</u>

현행	개정안
<u>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 여건 등 입항·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실은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u> 2. 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 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 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u>강제도선</u>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	<삭 제> ④ 제3항----- ----- <u>시운전 운항</u> <u>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u> <u>·수리한 선박을 시운전</u>----- ----- ----- --. ---- <u>강제 도선</u> ----- ----- ----- -----.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u>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u> ⑦ <u>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u> ⑧ <u>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u>	⑤ <u>별표4의2, 제3항 및 제4항</u>----- ----- ----- <u>별지 제10호서식</u>----- ----- ----- ----- ----- ----- ----- <u>제출해야</u> -----. --- <u>「항만법」 제26조</u>----- ----- ----- ----- -----. ⑥ <u>제5항</u>----- ----- ----- <u>별표4</u> <u>의2,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u> ----

현행	개정안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u>아니하여</u> <u>도</u>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 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u>발급하</u> <u>여야</u> 한다. ⑨ (생략)	----- <u>않아도</u> ---- ----- ----- ----- ----- <u>발급해야</u> ---- --. ⑦ (현행 제9항과 같음)